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 <개정 2023. 3. 20.>

관리번호

##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(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)

\_\_\_\_\_\_ [ ]기하 내 시고 [ ]수정신고 [ ]기하 후 시고

※ 뒤쪽의	의 작성병	·법을	읽고 작성	하시기 년	마다 배 바랍니다.		,, 0	. — .	J. 1 C	' -	_				( 앞쪽)
	① 성	명			② 주민	등록번호				③ 거	주 -	구 분	[] 거주	다[]버	가주자
수증자	④ 주	소								⑤ 전 7	자우편	주소			
	⑥ 전호	밴호	(자 택)			(휴	대전화)			⑦ 증0	<u></u> 역외자	관계			
	8 성	명			9 주민	등록번호				⑩ 증	여 일	! 자			
증여자	① 주	소								① 전	화 반	1 ਨ	( 자 트 ( 휴대전호	† ) 화)	
세 무		명			① 사업기	다등록번호				① 관	리 반	호			
대리인	16 전호	밴호	(사무실)							(휴대전	<u>덕</u> 화)				
		구	분			금	액			구	분			금	액
① 증	여	재	산 :	가 액					③ (③			40 +	- /		
18 비	과 /	ᅦᅏ	내 산	가 액					③ 기	납 남속세 및	부 ! 증여서	세  법」 <sup>7</sup>	액 제58조)		
	19 (	글 익 년 「상속	법 인 출 세 및 증(	연 재 선 여세법」	산 가 액 제48조)			세액 공제	③ 의 ( 전	국 납 }속세 및	부 세 ! 증여서	액 ll법」 :	공 제 제59조)		
과세가 <sup>9</sup> 불산인	앨 (	글 익 「상속	신 탁 세 및 증(	재 산 여세법」	가 액 제52조)				40 선(당	고 상속세 및	세 안 ! 증여서	택 공 ( 베	당 제 제69조)		
	21) (	당 애 ' 「상속/	인 신 네 및 증여	탁 재 신 세법」 제	난 가 액 52조의2)				41) 그	밖의	공제 •	감면	년 세 액		
② 채		_	₽	액				42 -	신 고 툴	를 성	실 가	산	세		
33 증	여 <i>7</i> 상 <del>속</del> 세 및	대 선 증여시	<u>+</u> 가 네법」 제47	산 액 '조제2항)				-	합 부						
② · 증	0‡ / - (18) - (	네 고 19 - 2	바 세 ① - 21) - (	가 액 ② + ②)				44	공익법인 (「상속세	<u> </u> 등 및 증여	관련 세법」	가산 제78 <i>3</i>	세 조)		
		25 E	내 우	자					자진납투 ③4 + ③5 -						
증여재	산공제	26 2	딕 계 존	비속					납부방법		납부	및 신	청일		
		27	그 밖의	친 족				46 Q	년 부 연	납					
ᅠᢂ (「	해 상속세	손 및 증	실 등 여세법」	공 제 제54조)				현금	47) 분	납					
29 감	정	평 기	· 수	수 료					48 신고남	납부					
③ 고써	  표 <del>준(</del> 24	- 25 -	26 - 27 -	28 - 29)				Г.	└── 상속세 달	 및 증여	ーーー  세법	제6	8조 및	같은	 법 시
③1) 세				율				행량	년 제65조	제1항0	세 따라	· 증여	세의 고	·세가인	및
③ 산	į	출	세	액				인이	표 <del>준을</del> 신 <b>알고 있</b> 는	[12]이터 <b>- 시실을</b>	, 취 내? 을 그대5	8글 전 로 적었	조 이 심 등을 확	도이었고 인합니다	산 선포 나.
③ 세	대 ( 상속세 5	생 트 및 증 0	냑 가  세법]	산 액 제57조)				신.	고인		년	월		<u>일</u> 명 또는	인)
③ 산	출시	네 아	계(3	2 + 33)				세	무대리인	은 조	네전문2	<u> </u>	<u> </u>	<u>식</u> 신고	2서를
③ 0	자	Ś	낭 당	액					<b>!하고 공</b> 무대리인		삭성ㅎ	r었음 -		<b>합니디</b> 명 또는	
36 박	물관자	료 등	징수유	예세액					세무/	서장 🥫	귀하				
신고 제출	서류	2. 채-	겨재산 및 무사실 등 민등록표등	그 밖의	   서(부표) 입증서류	1부 1부								수	/료 음
담당공 확인,					관계를 알	수 있는 기	가족관계등	등록부						HA.	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## 작성방법

- ※ 이 서식은 이래 증여세 세율표 다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,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1. "② 주민등록번호" 및 "⑨ 주민등록번호"란: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)를 적습니다.
- 2. "③ 거주구분"란: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✔ 표시합니다.
  - \* "거주자" 및 "비거주자" 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3. "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"란 :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. [예시 : 부모(증여자)가 자녀(수증자)에게 증여하는 경우 : 자]
- 4. "③ 성명"부터 "⑥ 전화번호"란까지 :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.
- 5. "① 증여재산가액"란: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서식 부표)의 "⑨ 증여재산가액"과 다음 각목의 구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.
  - 가.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[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) "⑫ 계"의 금액]이 5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"⑰ 증여재산가액"
  - 나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[가업증여 과세특례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) "⑧ 합계액"]이 최대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: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"① 증여재산가액"
- 6. "② 채무액"란: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[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) "⑫ 계"의 금액이 5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"⑱ 채무액"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
- 7. "> 배우자"란부터 "② 그 밖의 친족"란까지 :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.

가. 배 우 자 : 10년간 6억원 (2008.1.1. 이후 증여분부터) 나. 직계 존 비속 :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 /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(2014.1.1. 이후 증여분부터) 다. 그 밖의 친족': 10년간 1천만원 (2016.1.1. 이후 증여분부터)

- \*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- 8. "③ 세율", "② 산출세액"란 :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괴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.
  - \* 산출세액 = (과세표준 × 세율) 누진공제액

#### <증여세 세율표>

증여재산 구분	과세표준	세율	누진공제액
가. 창업자금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)	45억원* 이하	10%	_
나 되어스게 즈시 드/「ㅈ네트레페하버 페20ㅈ이스)	60억원 이하	10%	-
나. 가업승계 주식 등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)	60억원 초과 290억원** 이하	20%	60,000만원
	1억원 이하	10%	_
	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20%	1,000만원
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자산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30%	6,000만원
	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40%	16,000만원
	30억원 초과	50%	46,000만원

- \*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: 95억원
- \*\* 부모의 가업 영위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: 390억원, 30년 이상인 경우 : 590억원
- 9. "③ 이자상당액"란 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10. "④ 신고불성실가산세"란부터 "④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"란까지: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,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.
- 11. "④ 연부연납"란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. 이 경우 상속세(증여세)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(별지 제11호서식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12. "④ 분납"란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(예정) 일자를 적습니다. 다만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- 가.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
  - 나.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
- 13. "⑱ 신고납부"란 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.

관리번호 -

#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

	성방법을 읽고																( 앞쪽)
<ul><li>① 재산구분</li></ul>	· ② 재신종류	7071	70.711	3	소 재 :	지 • 법	인명 등		4 사	업자등록	5) 수	량	@ FI7	7	평가	(8)	평 가기 준
<sup>-</sup> 코 - 트	② 재산 <del>종류</del> 코 드	국외자산 여 부	국외재신 국 가 명	<u>+</u>					[ ]	업자등록 호 지 분 율 )	(면	적)	⑥ 단기		평가 가액		평 가 기 준 코 드
		[]여[]부															
		[]여[]부															
		[]여[]부															
		[]여[]부															
		[]여[]부															
		[]여[]부															
		[]여[]부															
		[]여[]부															
		[]여[]부															
	9 증 0	· 대 1	· 가	액													
	10 비 과	- 세 재	산 가	액													
		① 공익[	법인 출연	연 재 산 가 액													
계	과세가액 불산입액	① 공 익	신 탁	재 산 가 액													
		① 장애	배 인  신 탁 재 산 가 액														
	① 증 여	재 산	가 산	액													
	①5 합			계													
첨부	-서류	증여재산 경 [예: 주주		번호 및 잔고증명	명서, 예금	금통장 사본	: 등]							<u>'</u>			수수료 없음

#### 작성방법

1. "① 재산구분코드"란 :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.

재산구분	증여재산	증여재산 (영 <del>농농</del> 지)	증여재산가산 (거주자)	증여재산가산 (비거주자가 거주자 신분으 로 받은 증여재산)	비과세재산	과세가액불산입 (공익법인 출연재산)	과세가액불산입 (공익신탁 재산)	과세가액불산입 (장애인 신탁재산)
코드	A11	A14	A21	A22	B13	B21	B22	B23

2. "② 재산종류코드"란 :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.

재산구	분 현금	토지 l (순수토지)	토지॥ [일반건물(07) 의 부수토지]	개별주택 (부수토지 포함)	공동주택 (부수토지 포함)	오피스텔 • 상업용건물 (부수토지 포함)	일반건물* (부수토지 제외)	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	유가증권 (상장)	유가증권 (비상장)	금융재산 (현금, 유가증권 제외)	기타재산 (01~11유형, 13유형 제외)	가상자산
코드	01	02	03	04	05	06	07	08	09	10	11	12	13

- \*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~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
- 3. "③ 소재지·법인명 등"란: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.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✔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·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. 부득 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.
  - 가.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: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(예시 :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-14)을 적습니다.
  - 나.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: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(예시 : 보험금인 경우 □□생명 △△보험 / 유가증권인 경우 ㈜○○건설)을 적습니다.
- 4. "④ 사업자등록번호(지분율)"란: "② 재산종류"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,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(예시: 증여자가 보유한 50% 지분 중 2분의 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%로 기재)을 각각 적습니다.
- 5. "⑧ 평가기준코드"란 :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.

はコレフス	해당 재신의 매마/래기액	해당 재산의 감정기액	해당 재신의 수용보상기액	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기액	등 뛰대에게 인새 유	현금등 기액	저당권 등 평가특례기맥	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기액
당시기군	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0조)	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6조)	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1조부터 제65조)					
코드	01	02	03	04	05	06	07	08